

퇴직연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01 100세시대! 노후설계는 필수입니다



길어진 시간!

100세 시대에는 나의 수명이 자산의 수명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과 예상 은퇴시점, 나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노후에 필요한 목표연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현금흐름의 핵심은 3층연금입니다



03 노후설계는 3층연금으로 하세요



* 노후준비 상태 점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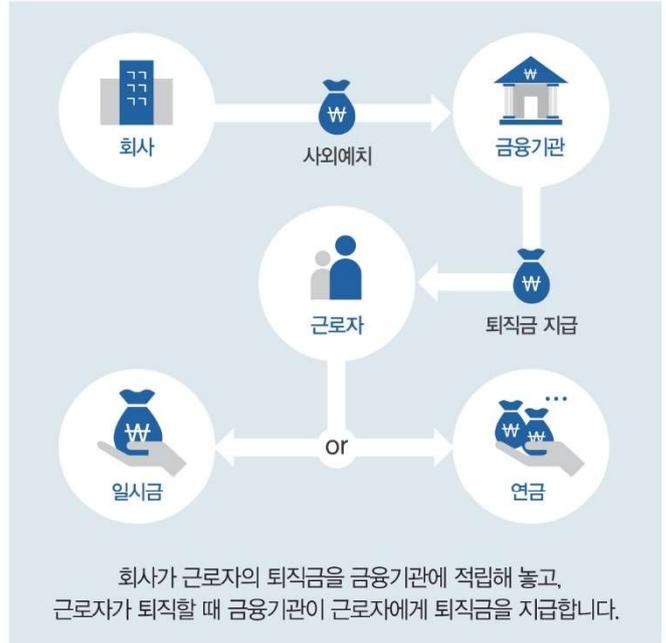
-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수준 예상해보기
- 3층연금에서 나오는 연금액 계산해보기
- 부족한 노후자금 추가로 준비하기

* 연금수령시 예상 퇴직연금액(월)

퇴직급여	10년	20년	중신(10년 보증)
1억원	91만원	50만원	31만원
5천만원	45만원	25만원	16만원

※ 위 금액은 적용이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금액으로 실제 수령할 연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중신연금은 제9회 경험생명표를 반영하여 계산되었음

02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나를 위해 가입해주는 제도입니다



03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 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 DC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적립금 운용 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퇴직연금제도
운용주체 : 회사	운용주체 : 근로자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0일치 평균임금* × 근속년수	퇴직급여 : 회사부담금(매년 연간임금* 총액의 1/120이상) + 운용수익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포함되는 것
 - 지급 조건, 시기, 지급률 등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는 것
 -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
- 포함되지 않는 것
 - 일시적 돌발적 사유로 지급된 것과 같이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 (경영성과금, 해외파견수당 등)
 -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거나 사업주의 포상적, 은혜적 기부(경조사비 등)
 - 현물,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급식, 교통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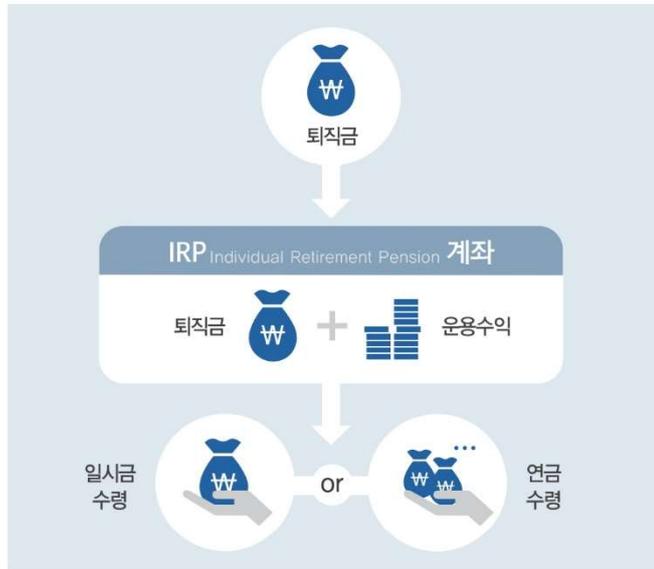
출처 : 허갑례, 「근로기준법」 제24판 419

표준형 DC제도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표준규약으로 DC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표준형DC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나 특성은 표준규약에 규정합니다. 표준규약은 근로법 제23조 1호의 DC제도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표준계약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급여청구, 가입자교육의무 등 일반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방식은 일반 DC와 동일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03 퇴직시 퇴직급여는 IRP로 지급됩니다



- ※ IRP 적립금 의무 이전
 - 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함
 - IRP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 연금수급 요건
 - 55세 이상 -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 (일시금은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시 혹은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가능)
- ※ 세금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원금	퇴직소득세	연금 수령기간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 × 70% 연금 수령기간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 × 60%
운용 수익	기타 소득세(16.5%)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하 - 연금소득세(3.3~5.5%)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초과 - 전액 종합소득과세

IRP의 효과

<p>가입</p> <p>퇴직소득세만큼 투자원금 증가</p>	<p>운용기간</p> <p>다른 소득이 많을 때 운용수익 절세(과세이연)</p>	<p>수령</p> <p>일시금 or 연금 (퇴직소득세 최대 40% 절감)</p>
---	---	---

✓ IRP는 퇴직금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넣어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납입한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연간 700만원
------	------------	---------	----------

세액공제율

구분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 ※ 연금저축과 DC/IRP 개인부담금 합산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단,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300만원)
- ※ 2020~2022년까지 만 55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단,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제외)
- ※ 세액공제 받은 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04 기타

수급권의 보호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미리 금융기관에 사외예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호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안내 (DC, IRP)

사유	중도인출	담보대출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가를 목적으로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 단,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중 1회 한도	○	○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그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 ※ 청구일 직전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직전년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가능	○	○
· 과거 5년 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 이하로 중도인출 가능	○	×
·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내 가능	×	○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	×	○
· 자연 및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내 가능	○	○

- ※ 가능한도 [중도인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 [담보대출] 가입자별 적립금의 50%
- ※ 근퇴법상 퇴직연금적립금 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퇴직 전에는 담보권 실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법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당사에서는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담보대출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

퇴직연금제도 폐지, 중단 시 업무처리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퇴직연금제도의 중단
· 노사합의로 폐지하는 경우 등 → 적립금은 가입자의 IRP계좌로 이전하고, 근퇴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	·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등 → 개인부담금 납입,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 현황 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의 업무는 계속 수행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근퇴법 제8조 제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함

퇴직연금 계약이전

1 계약변경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아 규약변경 ·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수리
2 계약이전 신청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계약체결
3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으로 가입자정보, 적립금 이전
4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 새로운 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운영

퇴직급여 직접청구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용자(회사)를 통해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

※ 미납부담금 등 기타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1 서류접수	준비서류 구비 후 접수 접수시간 : 09:00~14:00
2 지급	서류 적합성 확인 후 IRP개인형 계좌 또는 일시금 수령 계좌로 지급 (매도상품에 따라 최소 2일 이상 소요)

- ※ 준비서류
 - 퇴직사실증명서
 - IRP계좌확인서(IRP로 이전할 경우 한)
 - 퇴직연금 지급 청구서
 - 채당금확인서(채당금 받을 경우 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DB형 추가내용

01 우리회사 퇴직연금제도 기본정보

회사명	계약유형	계약일
엠티에스코리아(주)	DB	2010-12-31

※ 기준일자 : 본 안내장에 보여지는 여러가지 정보(수치 데이터 등)를 산출하는데 있어 기준이 된 시점으로, 데이터 산출일에 따라서 기준일이 달라지면 다른정보 들도 변경될 수 있음

02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근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

우리회사 DB가입자(의 예상) 퇴직금을 보여줌으로써, 회사의 퇴직급여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예시	평균근속기간	평균임금	표준급여액(예상퇴직금)
	10년	7,000,000	70,000,000 원

- 1) 평균근속기간**
산출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장(또는 회사) 전체 가입자의 평균근속기간의 합을 전체 가입자수로 나눈 값
- 2) 평균임금**
산출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장(또는 회사) 전체 가입자의 평균임금의 총합을 전체 가입자수로 나눈 금액
*가입자의 평균 임금 : 퇴직등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3) 표준급여액**
평균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액으로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표준급여액은 해당산업별 표준급여액을 산출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03 부담금 납입현황

[근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가목]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납입한 부담금 내역입니다.

납입연차	해당 사업년도	부담금 납입액
1년차	2021년 9월	89,070,388 원
2년차	2020년 9월	628,050,025 원
3년차	2019년 9월	1,352,963,651 원

- 1) 납입연차**
부담금 납입상황을 연단위로 표시(1년차, 2년차, 3년차)
- 2) 납입기간**
산출기준일 현재 직전 3년 중에서, 당해 납입연차(1년차, 2년차, 3년차)에 해당하는 기간 (도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표시)
- 3) 부담금납입액**
미래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으로 납입된 총액

04 퇴직연금자산 적립현황 재정검증 결과

[근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다목]

근로자 퇴직시 회사가 지급해야할 퇴직금 중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 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준책임준비금	계속	5,810,568,367 원
	비계속	5,564,267,582 원
최소적립금	5,229,511,530 원	
적립금액	5,871,422,910 원	
적립비율	101%	

- 1) 기준일자** : 사업연도 종료일
- 2) 기준책임준비금**
사용자가 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Max(계속 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
④ 계속 기준 : 우리 회사 DB 가입자의 평균임금, 예상 퇴직일 등을 가정하여 보험수리적으로 예측, 계산한 총 퇴직금 합계
⑤ 비계속 기준 : 우리 회사 DB 가입자 전원이 사업연도 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시 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할 총 퇴직금 합계
- 3) 최소적립금**
④ 2019년 ~ 2021년말 : 기준책임준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⑤ 2022년 이후 : 기준책임준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4) 적립금액(연금자산)**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금액이며 기준일자에 해당하는 금액
- 5) 적립비율** : Max(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에 대한 적립금액의 비율
※ 퇴직연금자산적립현황은 당사를 통해 재정에검증을 받은 DB계약단체에 한해 제공됨
재정검증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공됨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처리기준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 가능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 가능
※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든 단체 적용 아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된 금액이 법에서 정한 최소 적립금의 95%미만 수준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법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적립하기 위해 부족 금액을 최대 3년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재정안정화계획서에서는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근로자의 과반수가 임한 노동조합이 있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해야함. 또는 회사는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3년간 보존해야함.

05 회사의 적립금 운용현황

[근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마목]

기준일자 : 2020-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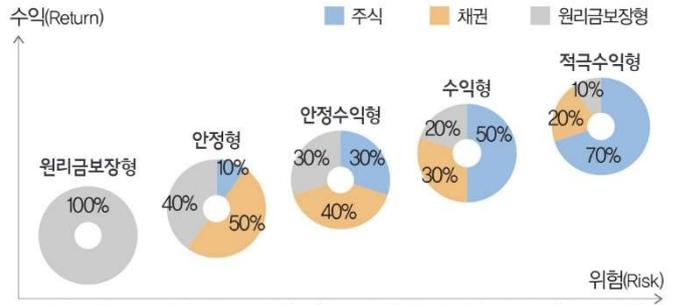
상품유형	적립금액
원리금보장형	5,871,422,910 원
실적배당형	-

- 1) 상품 유형** : 원리금보장형 및 실적배당형 상품
- 2) 적립금액** : 퇴직급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이 적립된 자금으로 수수료 운용수익 등이 반영된 금액
※ 적립금 운용목적 및 수립에 관한 안내사항
회사는 근로자의 소중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용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DC형 추가내용

01 투자원칙

분산투자	장기투자	적립식투자
		
각각의 금융상품 특성으로부터 오는 서로 다른 위험을 분산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 감소	투자시점과 금액을 나누어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 상기 모델포트폴리오는 확정기여형(DC)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자산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예시한 것임

02 운용방법의 종류

위험도 낮음	!	위험도 높음
원리금보장형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어, 원금손실이 없는 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는 상품
! 물가상승률이 높을 경우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음		!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금리연동형
- 이율보증형
- 예금
- 저축은행 상품

가입자별 적립금의 70% 이내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주식형

단, TDF상품은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 (주식투자비중이 80% 이하인 상품에 한정)

[참고] 상품선택시 유의사항

-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가입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및 매도/매수 기준가 적용일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상품의 중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변경 또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펀드 매도 시 소요기간은 상품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해외펀드의 경우 최장 1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DC/IRP는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가입자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저축은행은 상품이 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되 타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가입한 동일 저축은행의 퇴직연금예금의 원리금 가입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저축은행 예금의 경우 특별종도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별도의 특별종도해지 적용이율이 적용됩니다.
- TDF는 Target Date Fund의 약자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분산투자를 운용사가 진행하는 펀드입니다.

03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

각 운용방법은 위험과 기대수익률이 각각 다르며,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커집니다. 투자원칙과 각 상품에 대한 이해 후, 나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모델포트폴리오를 참고하세요! ▶

- ✓ 투자기간이 길고 리스크 감내도가 클수록 실적배당형 비중을 높게
- ✓ 수익의 변동성을 싫어할수록 원리금보장형 비중을 높게

04 수익률 관리

- 수익률, 만기 SMS 알림시스템을 통한 리스크 관리
- 라이프사이클 옵션으로 연령에 따라 투자비중 자동 재조정

- 분할매수 옵션으로 목돈을 원하는 기간(2~36개월)동안 적립식 펀드 투자
- 자동자산 재배분 옵션으로 펀드별 투자비율 유지

05 회사부담금과 관련된 내용

DC부담금 산정방법

 회사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며 상세 내용은 규약에 따라 정함
 근로자	회사부담금 외에 추가로 개인자금을 넣을 수 있으며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IRP 개인부담금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부담금 납입기한이 경과한 경우

회사가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면 근로자의 운용수익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일까지 미납하면 지연이자 부과됨

• 지연이자 발생 시기

회사가 정해진 기일(또는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 부과(단,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음)

• 지연이자 적용률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DC형 추가내용

06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이용방법



로그인
삼성생명 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MY삼성생명 - 퇴직연금
퇴직연금 조회, 입금, 관리 등
다양한 업무처리 가능

주요메뉴



**퇴직연금
조회**



퇴직연금 종합현황
삼성생명 퇴직연금 계약의
종합정보 확인



적립금/수익률 조회
계약별, 상품별 적립금 및
수익률 확인



적립금 거래내역 조회
계약별, 상품별 적립금 상품의
거래내역 정보 확인



만기예정상품 조회
운용중인 상품 중 만기가 있는
상품의 정보 확인



IRP 지급처리 조회
IRP 개인형 계약의
지급처리현황 확인



**퇴직연금
관리**



운용상품변경
현재 운용중인 상품을 매도하여
새로운 상품에 자금 투입



운용상품변경이력 조회
매도상품 기준으로 정렬된
상품변경이력 확인



부담금 투입비율 변경
향후 부담금이 투입된 상품과
비율 지정



투자성향진단
고객님의 투자성향 확인



수익률 알림 서비스
운용중인 상품의 상/하한 수익률을
설정하여 알림서비스 수신



안내수신 설정
삼성생명 계약 관련 안내의
수신 여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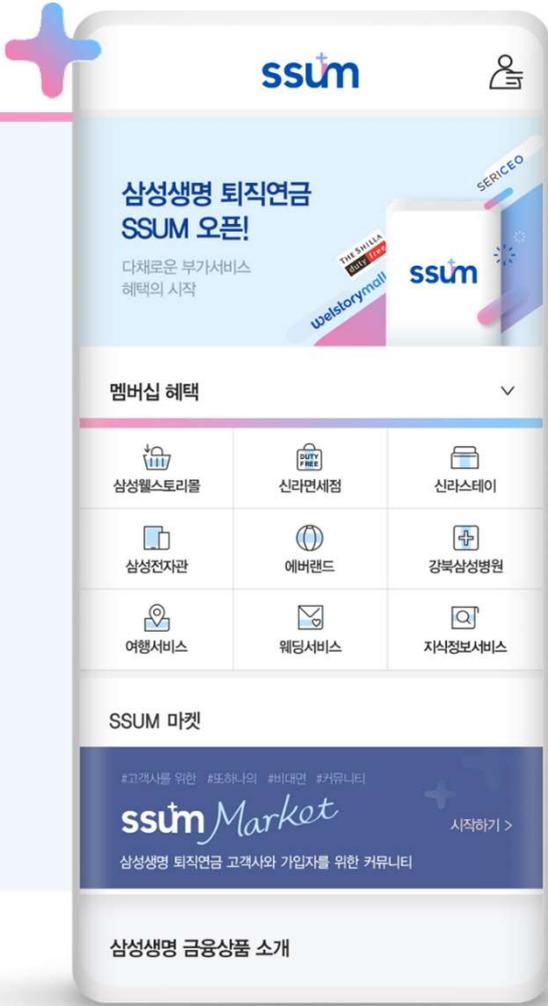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제도 및 투자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내 손안의 삼성생명 퇴직연금 부가서비스



쌈(SSUM)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고객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모아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삼성웰스토리몰

임직원 전용 쇼핑몰

신라면세점

상시 최대 20% 할인 혜택 및
매월 적립금 10만원

삼성전자관

전자제품 특가 판매

신라스테이

객실 최대 10% 할인 &
중식/석식 뷔페 10% 할인

에버랜드

정상가 대비 20% 할인

여행서비스

여행사 패키지 최대 7% 할인

지식정보서비스

주2회 지식컨텐츠 제공

웨딩서비스

100개 제휴 토탈 웨딩 서비스

강북삼성병원

임직원 전용 종합건강 프로그램

※ 본 부가서비스는 삼성생명과 협약을 체결한 각 제휴사에서 제공하며,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커뮤니티 SSUM Market



삼성생명 SSUM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삼성생명 SSUM을 검색 후 설치해 주세요.

